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228

제안연월일: 2024년 12월 17일

제 안 자:교육위원장

#### 1. 수정이유

- 동 개정조례안에 명시된 "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가이드라인」" 지침명이 2019년에 "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"로 개정 됨에 따라 "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"로 수정하고자 함.
- 또한 모니터단 구성원으로 포함된 "학생"은 안전 및 건강권 측면에 서 모니터단 구성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고, "교육지원청 시설담당 공무원"은 공사감독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"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가이드라인」이"를 "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가"로 수정함(안 제12조제1항).
- 나. 모니터단의 구성원으로 "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"과 "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"을 삭제함(안 제12조제2항제3호, 제8호).

### 3. 참고사항 : 없음.

#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가이드라인」이"를 "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가"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, 제5호, 제6호, 제7호를 각각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7호로 한다.

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〈신 설〉	제12조(학교 석면 모니터	제12조(학교 석면 모니터
	단) ① 학교의 장은 학	단) ①
	교의 석면공사가 확정	
	된 경우 <b>「학교시설 석</b>	<u></u> 「학교시설
	면 해체·제거 가이드	<u>석면 해체·제거 안내</u>
	<u>라인」이</u> 규정한 업무	<u> 서亅가</u>
	수행을 위해 학교 석면	
	모니터단(이하 "모니	
	터단"이라 한다)을 구	
	성 · 운영한다.	
<u>〈신 설〉</u>	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	② (개정안과 같음).
	호의 사람으로 구성하	
	되, 공사규모에 따라	
	학부모 위원을 추가할	
	수 있다.	
	1. 학교의 장 또는 학교	1. (개정안과 같음)
	교감	
	2.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	2. (개정안과 같음)
	3. 학생회가 추천하는	<u>3. 〈삭 제〉</u>
	<u>학생</u>	
	<u>4.</u> 학부모회가 추천하	3. 학부모회가 추천하
	는 학부모	는 학부모
	<u>5.</u> 공사 감리인	<u>4.</u> 공사 감리인
	<u>6.</u> 석면에 전문지식을	5. 석면에 전문지식을
	갖춘 외부전문가	갖춘 외부전문가

<u>7.</u> 해당 지자체에 등록	<u>6.</u> 해당 지자체에 등록
된 시민단체가 추천	된 시민단체가 추천
하는 사람	하는 사람
8. 교육지원청 시설담	8. 〈삭 제〉
당공무원 1명	
9. 그 밖에 학교의 장이	<u>7.</u> 그 밖에 학교의 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하는	필요하다고 인정하는
<u>사람</u>	사람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학교 석면 모니터단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내서」가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석면 모니터단(이하 "모니터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한다.

-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,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 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.
  - 1. 학교의 장 또는 교감
  - 2.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
  - 3.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
  - 4. 공사 감리인
  - 5.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가
  - 6.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
- 7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③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·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,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시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④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- ⑤ 학교의 장은 현장점검 시 모니터단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.
  - ⑥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
제13조(모니터단 교육) ①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·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 설〉</u>	제12조(학교 석면 모니터단) ① 학교의
	장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
	우 「학교시설 석면 해체·제거 안
	내서」가 규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
	학교 석면 모니터단(이하 "모니터
	단"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한다.
<u>〈신 설〉</u>	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
	로 구성하되, 공사규모에 따라 학부
	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.
	1. 학교의 장 또는 학교 교감
	2.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
	3.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
	<u>4. 공사 감리인</u>
	5.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전문
	<u>가</u>
	6.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
	추천하는 사람
	7.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
	인정하는 사람
<u>〈신 설〉</u>	③ 모니터단은 학교 석면 해체·제
	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,
	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하는 등 감
	시활동을 하여야 한다.
<u>〈신 설〉</u>	④ 모니터단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
	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
	<u>다.</u>
1	,

<u>〈신 설〉</u>	⑤ 학교의 장은 현장점검 시 모니터
	단에게 마스크와 방진복을 지급하여
	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.
<u>〈신 설〉</u>	⑥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
	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.
<u>〈신 설〉</u>	제13조(모니터단 교육) ① 교육감은 모
	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
	면 해체·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
	을 실시하여야 한다.
<u>〈신 설〉</u>	② 학교의 장은 모니터단이 활동하
	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
	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
	<u>한다.</u>
<u>제12조</u> (생 략)	<u>제14조</u> (현행 제12조와 같음)